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331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5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4. 12. 3. 강제경매개시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2. 17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입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윤민우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1.10.15	70,000,000		2021.10.15	2021.09.23		
주택도 시보증 공사 (임차인 윤민우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10.15.~ 2023.10.14	70,000,000		2021.10.15	2021.09.23	2024.11.11.	
<비고>										
윤민우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 9. 11.임 주택도시보증공사: 임차인 윤민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재매각임.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%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331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0-17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9번길 11-4

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

3층 다세대주택

지하층 59.94m²

1층 85.69m²

2층 85.68m²

3층 85.68m²

옥탑 8.64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 203호

철근콘크리트조

21.19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0-17

대 154.4m²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54.4분의 12.37

감정평가액

65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 2026.02.04 31,850,000 6,370,000

2회 2026.03.18 22,295,000 4,459,000

3회 2026.04.29 15,607,000 3,121,400

4회 2026.06.10 10,925,000 2,185,000

재매각임.

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%